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담합 제재

- 기술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가격 등을 담합한 대구·경북 9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5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재해예방 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 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9개사는 신한국건설안전(주), (주)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주), 서상건설안전(주), (주)신영씨엔에스, (주)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주), (주)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이며, (사)대한산업안전협회는 견적단가 합의에는 미참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해예방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9개사는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기존 거래관계 등이 있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9개사 중 1개 업체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대상 사업자를 정하였다.

또한, 2019년 경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2020년 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 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번 조치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안전 관리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의 가격 등 담합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책임자	과장	정운학	(053-230-6310)
		담당자	조사관	박종언	(053-230-6311)



1

법 위반 내용

- (합의 배경) 2014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재해예방 지도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지도 수수료 단가가 낮아지고 영업수익률이 악화되었다.
 - 9개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4년 말 대표자 모임을 갖고,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기준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합의*하게 되었다.
 - * 이후 신규사업자 진출 등으로 시장 상황이 변하게 되자 피심인들은 2020년 말 2차 합의를 함
- (합의 내용) 9개사는 관급 건설공사의 낙찰 건설업체*를 입찰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기존 거래 관계 유무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배정하였다.
 - * 2022. 8. 18. 이전에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주체는 건설공사도급인(낙찰 건설업체)였으나,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발주자로 변경되었다.
 - 9개사 대표자들은 2차례 기본 원칙에 합의 후 2014년 말 ~ 2022년 9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약 380회 모임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을 정하였다.

<2차례 합의 내용>

합의시기	2014년 말(1차 합의)	2020. 12. 7.(2차 합의)
합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사에 배정된 건설업체에 무단으로 견적제출 금지 · 타 사의 기존거래처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합의 재확인
위약금 부과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현장의 기술지도 횟수를 각 사별로 배분 후 초과 횟수당 5만원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사 배정 건설업체와 임의로 계약할 경우 공사기간(개월 수)×15만 원의 위약금 부과 · 초과 횟수당 5만원 부과

※ 9개 사는 공사현장별 기술지도 횟수를 산정한 후(월 1회×공사 개월 수) 합의된 비율만큼 각 사별 기술지도 횟수를 정하고, 초과 횟수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였다.

- 또한, (사)대한산업안전협회를 제외한 8개사는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도 정하였으며, 단가는 낙찰금액에 따라 달리 정하였다.

〈기술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단가 합의 내용〉

합의시기	2014년 말(1차 합의)		2020. 12. 7.(2차 합의)	
합의내용	낙찰금액	최소견적금액	낙찰금액	최소견적금액
	40억 원 미만	232천 원/회	10억 원 미만	100천 원/회
	40억 원 이상	355천 원/회	40억 원 미만	300천 원/회
			40억 원 이상	400천 원/회

- (실행) 위 1,2차 합의를 바탕으로 각 사별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를 배정한 관급공사 건수는 총 20,425건이며, 연도별 전체 배정건수 대비 평균 실제 계약률은 최저 28.2% ~ 최고 5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확보된 견적서 등에는 작성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1회당 기술지도 수수료가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 최저 견적단가 실행 여부의 확인은 어려웠다.

2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4호
-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395백만 원 부과

〈사업자별 과징금액〉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액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액
1	신한국건설안전	52	6	한국안전컨설팅	61
2	삼진구조안전	56	7	대경안전컨설팅	16
3	안전종합기술원	49	8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19
4	서상건설안전	70	9	대한산업안전협회	40
5	신영씨엔에스	32			
			합계		395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분야에서 부실 기술지도 방지를 명분으로 최저 견적 단가를 합의를 하고, 업체간 기존 거래처를 보장해주는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공정위는 관급공사는 물론 사급공사의 안전관리분야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별첨**합의 가담 업체 일반현황**

(2023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순번	피심인	자본금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설립일
1	신한국건설안전(주)	50	260	3,002	195	1998.2.2.
2	(주)삼진구조안전기술원	50	277	1,374	236	2002.1.25.
3	안전종합기술원(주)	50	494	3,571	24	2003.9.15.
4	서상건설안전(주)	60	134	3,062	492	2005.6.29.
5	(주)신영씨엔에스	50	209	1,443	△23	2006.1.23.
6	(주)한국안전컨설팅	50	372	1,792	△170	2010.11.10
7	대경안전컨설팅(주)	100	404	1,823	205	2019.7.15.
8	(주)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153	299	5,951	25	1997.12.1.
9	(사)대한산업안전협회	131	12,648	163,752	16,779	1964.7.6.